



시보는 공무원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905호 2012. 10. 9(화)

◀ 입법예고 ▶

-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제2012-1487호) 2
-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 고 시 ▶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12-98호) 12

◀ 공 고 ▶

-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제2012-1466호) 14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제2012-1471호) 18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19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487호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8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현대 산업도시는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외형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시서비스 접근에 대한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경제력이 약한 노인·아동·여성의 경우, 여가·주거·보육·문화 등 각종 편의서비스 접근에 더 큰 제약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4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7조)
-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에 관하여 규정(안 제8조)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10조)

-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에 관하여 규정 함(안 제11조)
- 지역 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규정 함(안 제19조)

3. 관련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2년 10월 8일 ~ 10월 29일

6.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10.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여성정책담당)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편번호 790-722)

- ▶ 전화 054-270-3012, FAX 054-270-3020, 이메일 huchun@korea.kr

라. 제출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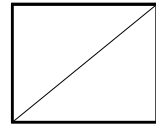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12. . . (제 회)

의
결
사
항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2. . .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포항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하 “법령”이라 한다)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며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포항시(이하 “시”란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還流) 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등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며,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 4. 추진사업 목록
-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 6.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사업관련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립·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9조(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3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조사·관리·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 가. 보행편의
 -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 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 라.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3. 주거단지

- 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 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13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2. ‘아동 안전지킴이’ 집을 지정 운영

제14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제15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취업, 창업 관련 정보제공과 상담
2.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
3.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확산

제16조(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의 행정지원
2.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제17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 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제18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제19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2. 포항시의회 의원

- 3. 여성정책 전문가, 공간정책 전문가
- 4. 여성단체, 시민단체, 여성활동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98호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4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공급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인근지역과 균형발전 도모
-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 면 적 : 907,540㎡
-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사 업 시 행 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 사무소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44길 7

- 5. 사업시행기간 : (기정) 2011. 06. 08 ~ 2016. 06. 08
(변경) 2011. 06. 08 ~ 2015. 03. 31
- 6. 시행방식(변경없음) : 환지방식
-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게재생략
-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일로부터 20일간(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3)
- 9.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없음)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공 고

경상북도 포항시 공고 제2012-1466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12. 10. 31까지 포항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8일

포항시장 박승호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 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국가기초구역 수	예비번호 수
포항시	500	448	52 (37948~37999)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별첨1, 별첨2, 별첨3과 같으며 포항시 도시계획과포항시 도시계획과에 따로 출력(종이),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 2012. 12. 21.

4. 문의

포항시 도시계획과 (☎054-270-3491~5)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서

(일련번호 : 기관명-시군구코드-접수번호)

의견제출 기관정보			
관련기관/ 부서명	/		
담당업무/ 성명	/		
연락처/ E-mail	/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명		시·군·구명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사유			
설정안 의견			
기존		변경 의견	
도면		도면	

※ 도면은 홈페이지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파일에 첨부하도록 하며 일련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2012년 월 일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5.1.25.>

포항시공고 제2012-147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4일

포항시장 박승호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주요경과지	개발계획		지정(폐지·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너비(m)	포장너비(m)	
홍해읍	면도	덕성선	홍해 101	덕성리 661	덕성리 658	1.1km		6.5	8.0	농어촌도로확포장

주 :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로과(☎054-270-3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2년 9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2. 10. 5.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9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신원기개업부
			안계염수	동지역 전체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안계염수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논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연일염	오천염	구룡포염	홍해염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20	불검출	0.18	0.19	0.2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5	불검출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2.4	1.7	1.9	2.5	2.1	1.4	1.3	2.1	1.8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	0.01	0.04	0.04	0.04	0.01	0.02	0.05	0.03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득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70	0.69	0.99	0.69	0.65	0.64	0.78	0.58	0.91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7	0.040	0.078	0.063	0.045	0.048	0.034	0.041	0.043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9mg/l이하	0.037	0.032	0.060	0.040	0.029	0.039	0.019	0.024	0.037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6	0.008	0.016	0.018	0.012	0.009	0.011	0.011	0.006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4	불검출	0.002	0.005	0.004	불검출	0.004	0.006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사) (수돗물사업부)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안계염수	북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북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82	47	62	80	82	32	43	96	64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4.1	5.7	5.2	불검출	3.6	1.6	4.4	2.3	4.7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9	7.6	7.5	7.8	7.6	7.4	7.6	7.9	6.8	
45.아연(Zn)	3mg/ℓ이하	0.013	0.002	불검출	0.002	0.003	0.010	0.011	0.140	0.004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20	13	15	20	19	14	21	19	16	
47.중발잔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24	82	87	136	139	68	78	150	136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9	0.12	0.10	0.14	0.10	0.11	0.13	0.20	0.06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41	18	25	39	37	17	24	53	24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	불검출	0.03	0.02	0.04	불검출	불검출	0.03	불검출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흥동	송동리	환흥동	해동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전류염소	4.0mg/ℓ이하	0.37	0.41	0.39	0.34	0.32	0.35	0.38	0.3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25	0.006	0.002	0.016	0.014	0.007	0.014	0.143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19	12	15	19	18	14	21	19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돗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돗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